무배당 알리안츠 변액연금보험
(거치형)

무배당 알리안츠 변액연금보험 (거치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2조【청약의 철회】
제 3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 4조【용어의 정의】
제 5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 6조【계약의 무효】
제 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 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9조【계약의 소멸】
제10조【보험 연령】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12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6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1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8조【해약환급금】
제19조【배당금의 지급】
제20조【소멸시효】

제4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21조【계약자 적립금의 계산】
제22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제23조【펀드의 유형】

제24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제25조【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제26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제27조【특별계정의 폐지】

제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8조【계약전 알릴의무】
제29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30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제6관 보험금 지급등의 절차

제31조【주소변경통지】
제32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33조【대표자의 지정】
제34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3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36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7조【보험금 수령방법의 변경】
제38조【계약내용의 교환】
제39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40조【약관대출】

제7관 분쟁조정 등

제41조【분쟁의 조정】
제42조【관할법원】
제43조【약관의 해석】
제44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45조【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제46조【결산사항의 통지】
제4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8조【준거법】
제4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무배당 알리안츠 변액연금보험 (거치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책임개시일부터 피보험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제1보험기간”, 피보험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 계약해당일(이하 “연금지급 개시일”이라 합니다)부터 종신연금 및 상속연금은 종신까지, 확정연금은 최종연금지급일까지를 “제2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이하 “약관대출이율” 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 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제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이하 “보장계약 보험료”와 “연금계약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③ 제1항 제2호의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연령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다음에 정한 생존연금 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종신연금(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 확정연금(10년, 15년, 20년)
- 상속연금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액보험”이라 함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 “일반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 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제3호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합니다.
3. “특별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이 보험의 제1보험기간에 한하여 운용합니다.
4. “펀드”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계정 자산을 말합니다.
5.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제1보험기간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단, 약관대출이 있는 경우 제45조(약관대출)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약관대출금액의 부리 적립액(이하 “약관대출적립금”이라 합니다)을 포함합니다.
6.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일시납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동조 제7호 및 제9호,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4항, 제1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3항 및 제39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중도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7.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제1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8.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이라 함은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9. “최저연금적립금”이라 함은 연금지급 개시시점에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10.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이라 함은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11. “특별계정 운용수수료”라 함은 특별계정 관리비용 등을 확보하기 위한 수수료를 말합니다.

제5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6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 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2. 납입보험료
3.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개시연령

4.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동조 제4항, 제4조(용어의 정의) 제7호 및 제9호, 제1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감액시까지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전 계약자적립금}}$$

(주)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전 중도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39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4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④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의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변경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연금지금 개시연령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⑤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8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확정연금의 확정연금 지급기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보험 연령】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연령은 보험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6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연령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연령은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연령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단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자동이체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의 매출이 승인된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29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8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2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특별계정투입보험료 (납입 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뺀 금액, 이하 "특별계정투입보험료"라 합니다)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② 제1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투입 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후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까지는 예정이율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선택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펀드의 투입비율로 가중 평균한 투자수익률)로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적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撤回)한 경우에는 제2조(청약의 철회) 제2항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

보험금 지급

2. 제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계산한 생존연금을 매년 지급

제1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금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해당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계약자적립금은 연금지급개시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해당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연금적립금으로 합니다.

③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을 경우를 포함하여,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간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1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 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6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제2보험기간 중 연금액 및 연금지급 개시이후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부리이율은 매분기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llianzlife.co.kr)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18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1보험기간의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③ 제2보험기간의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분기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해분기 말일까지 3개월간 확정 적용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연복리 3.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9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0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21조【계약자 적립금의 계산】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금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매월 계약 해당일에 월공제액(당월분의 사망보장 위험보험료와 납입후 유지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및 특별계정 운용수수료를 차감합니다.

제22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①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 이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

다.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③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제23조【펀드의 유형】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채권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5%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등에 투자합니다.
2. 혼합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80%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주식등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합니다.
3. 인덱스혼합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대출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8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상장지수투자신탁 및 주식 관련 파생 상품에 순자산(NAV)의 30%이내에서 투자하며, 상기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주가지수200(KOSPI200 지수)등을 목표지수(Target Index)로 하여 인덱스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나머지는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합니

다.
4. 향후 회사는 펀드를 추가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서 회사가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 변동 및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각 펀드의 투자대상 중 보험관련 법규에 제한이 있는 경우 운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24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시 제23조(펀드의 유형)에서 규정한 펀드 각각에 대하여 보험료의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년도 중 4회 이내의 범위에서 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 펀드별 해당 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②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년 경과후부터 보험연도 중 4회 이내의 범위에서 펀드 적립금의 일부 및 전부 이전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펀드 적립금 이전시 펀드 적립금은 10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의한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7조(특별계정의 폐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제5영업일』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 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제5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⑤ 회사는 제2항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자적립금의 0.2%범위 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제4항의 현금 이전

시 공제합니다.

제25조【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①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며 시가법은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② 특별계정의 유가증권 평가방법 및 운용은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제26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 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 총 좌수}}$

   단,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운용수수료,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27조【특별계정의 폐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24조(계약자의 펀드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른 펀드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제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8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9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8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등 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과 함께 당해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8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0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보험금 지급등의 절차

제31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2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33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4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생존연금의 경우)
4. 보험증권
5.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6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5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8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등급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7조【보험금 수령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한 사망보험금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8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9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제1보험기간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의 50% 범위내에서 보험년도 기준으로 년4회에 한하여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 이내로 부가 할 수 있으며, 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③ 제1항의 인출금액은 인출후 계약자 적립금이 500만원 이하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자 적립금을 인출 한 경우 제4조(용어의 정의) 제7호 및 제9호,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4항, 제1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인출시까지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frac{\text{인출시 계약자적립금 - 인출금액(수수료 포함)}}{\text{인출시 계약자적립금}}$$

(주)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전 중도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7조(계약 내용의 변경) 제3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40조【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약관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약관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 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약관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약관대출금액은 대출일을 기준으로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고, 이 계약의『약관대출이율 - 1.5%』로 부리하여 약관대출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단, 계약자에 의한 약관대출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보험기간에 상환이 있는 경우 상환을 한 날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약관대출적립금에서는 제외됩니다.

제7관 분쟁조정 등

제41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43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4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

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5조【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 등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46조【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제4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8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부가되는 특약의 경우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는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사망보험금(약관 제13조 제1호)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액	일시납 보험료의 10% +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

단,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사망보험금을 지급

2. 생존연금(약관 제13조 제2호)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

지급 사유		제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액	정액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체증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1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11차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지급액	소득보장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시점부터 10차년도 까지는 1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나. 확정연금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지급액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다. 상속연금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액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단,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지급)

㈜1. 「계약자적립금」이란 제4조(용어의 정의) 제5호에서 정한 적립금을 말하며,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 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 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 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 적립금도 변경됩니다.

2.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4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3항 및 제39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3. 생존연금의 계산은 제1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제2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제1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 및 「제2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4. 종신연금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체증(5%, 10%)하므로 실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 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종신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10회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회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6. 확정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횟수(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7. 위의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8. 「연금계약의 적립액」이란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금 개시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액)을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에서 생존연금 발생분(납입후 유지비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9. 생존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부리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별표2)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자	V01 - V09
2.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 - V19
3.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사이클 탑승자	V20 - V29
4.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 탑승자	V30 - V39
5.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 - V49
6.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V50 - V59
7.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 - V69
8.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 - V79
9.기타 육상 운수사고 (철도사고 포함)	V80 - V89
10.수상 운수사고	V90 - V94
11.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 - V97
12.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V98 - V99
13.추락	W00 - W19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 - W49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 - W64
16. 불의의 물에 빠짐	W65 - W74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W75 - W84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 - W99
19.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X00 - X09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 - X19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X20 - X29
22. 자연의 힘에 노출	X30 - X39
23.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 - X49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 - X59
25. 가해	X85 - Y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10 - Y34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 - Y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 - Y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 - Y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 - Y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 - Y84
32.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 ~ 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 중 처형 (Y35.5)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부리기간</th><th>지급이자</th></tr>
<tr><td colspan="2">사망보험금(약관 제13조 제1호)</td><td>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td><td>약관대출이율</td></tr>
<tr><td rowspan="4">생존연금 (약관 제13조 제2호)</td><td>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td><td>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td><td>예정이율</td></tr>
<tr><td rowspan="2">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td><td>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td><td>예정이율</td></tr>
<tr><td>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td><td>1년이내: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1%</td></tr>
<tr><td colspan="2">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td><td>예정이율+1%</td></tr>
<tr><td colspan="2">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td><td>약관대출이율</td></tr>
</table>

구분	부리기간	지급이자
해약환급금(약관 제18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주)1. 상기 예정이율은 제1보험기간 중에는「보장계약 예정이율」, 제2보험기간 중에는「공시이율」을 말합니다.

2.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약관 제20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알리안츠 변액연금보험
(적립형)

무배당 알리안츠 변액연금보험 (적립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2조【청약의 철회】
제 3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 4조【용어의 정의】
제 5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 6조【계약의 무효】
제 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 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9조【계약의 소멸】
제10조【보험 연령】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1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3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제14조【보험료의 납입 중지】
제15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21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2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23조【해약환급금】
제24조【배당금의 지급】
제25조【소멸시효】

제4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26조【계약자 적립금의 계산】
제27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제28조【펀드의 유형】
제29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제30조【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제31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제32조【특별계정의 폐지】

제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33조【계약전 알릴의무】
제3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3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제6관 보험금 지급등의 절차

제36조【주소변경통지】
제37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38조【대표자의 지정】
제3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4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41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42조【보험금 수령방법의 변경】
제43조【계약내용의 교환】
제44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45조【약관대출】

제7관 분쟁조정 등

제46조【분쟁의 조정】
제47조【관할법원】
제48조【약관의 해석】
제4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50조【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제51조【결산사항의 통지】
제5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53조【준거법】
제54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무배당 알리안츠 변액연금보험 (적립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책임개시일부터 피보험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제1보험기간”, 피보험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 계약해당일(이하 “연금지급 개시일”이라 합니다)부터 종신연금 및 상속연금은 종신까지, 확정연금은 최종연금지급일까지를 “제2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이하 “약관대출이율” 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 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제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이하 “보장계약 보험료”와 “연금계약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③ 보험료는 계약시점에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하여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단, 초회보험료의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만으로 하며, 추가보험료는 연간(보험년도 기준) 기본보험료 합계액의 200%를 한도로 하며 매회 납입시 최저 10만원 이상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의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연령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다음에 정한 생존연금 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종신연금(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 확정연금(10년, 15년, 20년)
- 상속연금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액보험”이라 함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 “일반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 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제3호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합니다.
3. “특별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이 보험의 제1보험기간에 한하여 운용합니다.
4. “펀드”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계정 자산을 말합니다.
5.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제1보험기간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단, 약관대출이 있는 경우 제45조(약관대출)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약관대출금액의 부리 적립액(이하 “약관대출적립금”이라 합니다)을 포함합니다.
6.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동조 제7호 및 제9호,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4항, 제1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3항 및 제44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중도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7.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제1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8.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이라 함은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9. “최저연금적립금”이라 함은 연금지급 개시시점에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10.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이라 함은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11. “특별계정 운용수수료”라 함은 특별계정 관리비용 등을 확보하기 위한 수수료를 말합니다.

제5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6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 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2. 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에 한함)
3.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개시연령
4.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동조 제4항, 제4조(용어의 정의) 제7호 및 제9호, 제1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감액시까지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전 계약자적립금}}$$

(주)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전 중도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44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4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④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의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변경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연금지금 개시연령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⑤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2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확정연금의 확정연금 지급기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보험 연령】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연령은 보험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6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연령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연령은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연령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단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자동이체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의 매출이 승인된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3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33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3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특별계정투입보험료 (납입 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뺀 금액, 이하 "특별계정투입보험료"라 합니다)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② 제1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회 보험료의 경우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후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까지는 예정이율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선택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펀드의 투입비율로 가중 평균한 투자수익률)로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경우 납입기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로, 납입기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로 하며, 납입일부터 납입기일까지는 납입보험료를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뺀 금액을 이체금액으로 합니다. 단, 추가보험료의 경우 납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적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撤回)한 경우에는 제2조(청약의 철회) 제2항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 중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만7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래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계약 유지를 원할 경우 보험료 납입 중지를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특약의 보험료는 완납 되어야 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5조(약관대출) 제1항에 의한 약관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관대출금과 약관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 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하여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을 적용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 계약자의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 상당액은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

②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33조(계약전 알릴의무), 제3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3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 지급
2. 제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계산한 생존연금을 매년 지급

제1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해당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계약자적립금은 연금지급개시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해당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연금적립금으로 합니다.
③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을 경우를 포함하여,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간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2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 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1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2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제2보험기간 중 연금액 및 연금지급 개시이후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부리이율은 매분기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llianzlife.co.kr)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23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1보험기간의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③ 제2보험기간의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분기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해분기 말일까지 3개월간 확정 적용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연복리 3.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4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5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26조【계약자 적립금의 계산】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금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매월 계약 해당일에 월공제액(당월분의 사망보장 위험보험료와 납입후 유지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및 특별계정 운용수수료를 차감합니다.

제27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①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③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제28조【펀드의 유형】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채권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5%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등에 투자합니다.
2. 혼합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80%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주식등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합니다.
3. 인덱스혼합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대출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8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상장지수투자신탁 및 주식 관련 파생 상품에 순자산(NAV)의 30%이내에서 투자하며, 상기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주가지수200(KOSPI200 지수)등을 목표지수(Target Index)로 하여 인덱스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나머지는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합니다.
4. 향후 회사는 펀드를 추가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서 회사가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각 펀드의 투자대상 중 보험관련 법규에 제한이 있는 경우 운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29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시 제28조(펀드의 유형)에서

규정한 펀드 각각에 대하여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년도 중 4회 이내의 범위에서 기본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 펀드별 해당 기본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②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펀드로 투입되며,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에 따라 해당 펀드로 투입됩니다. 단, 각 펀드별 해당 추가보험료는 5만원으로 이상으로 합니다.
③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년 경과후부터 보험연도 중 4회 이내의 범위에서 펀드 적립금의 일부 및 전부 이전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펀드 적립금 이전시 펀드 적립금은 10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의한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2조(특별계정의 폐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제5영업일』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⑤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 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제5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⑥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자적립금의 0.2%범위 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제4항의 현금 이전시 공제합니다.

제30조【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①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며 시가법은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② 특별계정의 유가증권 평가방법 및 운용은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제31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 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 총 좌수}}$

   단,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운용수수료,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32조【특별계정의 폐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29조(계약자의 펀드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른 펀드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

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제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33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3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3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등 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과 함께 당해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33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보험금 지급등의 절차

제36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7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38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생존연금의 경우)
4. 보험증권
5.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41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40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33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등급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42조【보험금 수령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한 사망보험금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3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44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제1보험기간 동안 회사에 소

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의 50% 범위내에서 보험년도 기준으로 년4회에 한하여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 이내로 부가 할 수 있으며, 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③ 제1항의 인출금액은 인출후 계약자 적립금이 500만원 이하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자 적립금을 인출 한 경우 제4조(용어의 정의) 제7호 및 제9호,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4항, 제1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인출시까지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frac{\text{인출시 계약자적립금 - 인출금액(수수료 포함)}}{\text{인출시 계약자적립금}}$$

(주)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전 중도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7조(계약 내용의 변경) 제3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45조【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약관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약관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 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약관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날에 해약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약관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약관대출금액은 대출일을 기준으로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고, 이 계약의『약관대출이율 - 1.5%』로 부리하여 약관대출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단, 계약자에 의한 약관대출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보험기간에 상환이 있는 경우 상환을 한 날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약관대출적립금에서는 제외됩니다.

제7관 분쟁조정 등

제46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50조【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 등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51조【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제5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53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54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부가되는 특약의 경우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는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사망보험금(약관 제18조 제1호)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액	500만원 +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

단,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사망보험금을 지급

2. 생존연금(약관 제18조 제2호)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

지급 사유		제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액	정액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체증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1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11차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지급액	소득보장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시점부터 10차년도 까지는 1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나. 확정연금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지급액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다. 상속연금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액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단,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지급)

㈜1. 「계약자적립금」이란 제4조(용어의 정의) 제5호에서 정한 적립금을 말하며,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 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 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 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 적립금도 변경됩니다.

2.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4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3항 및 제44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3. 생존연금의 계산은 제1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제2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제1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 및 「제2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4. 종신연금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체증(5%, 10%)하므로 실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 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종신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10회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회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6. 확정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횟수(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7. 위의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8. 「연금계약의 적립액」이란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금 개시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액)을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에서 생존연금 발생분(납입후 유지비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9. 생존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부리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별표2)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자	V01 - V09
2.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 - V19
3.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사이클 탑승자	V20 - V29
4.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 탑승자	V30 - V39
5.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 - V49
6.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V50 - V59
7.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 - V69
8.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 - V79
9.기타 육상 운수사고 (철도사고 포함)	V80 - V89
10.수상 운수사고	V90 - V94
11.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 - V97
12.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V98 - V99
13.추락	W00 - W19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 - W49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 - W64
16. 불의의 물에 빠짐	W65 - W74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W75 - W84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 - W99
19.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X00 - X09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 - X19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X20 - X29
22. 자연의 힘에 노출	X30 - X39
23.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 - X49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 - X59
25. 가해	X85 - Y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10 - Y34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 - Y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 - Y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 - Y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 - Y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 - Y84
32.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 ~ 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 중 처형 (Y35.5)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부리기간</th><th>지급이자</th></tr>
<tr><td colspan="2">사망보험금(약관 제18조 제1호)</td><td>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td><td>약관대출이율</td></tr>
<tr><td rowspan="4">생존연금 (약관 제18조 제2호)</td><td>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td><td>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td><td>예정이율</td></tr>
<tr><td rowspan="2">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td><td>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td><td>예정이율</td></tr>
<tr><td>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td><td>1년이내: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1%</td></tr>
<tr><td colspan="2">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td><td>예정이율+1%</td></tr>
<tr><td colspan="2">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td><td>약관대출이율</td></tr>
</table>

구분	부리기간	지급이자
해약환급금(약관 제23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주)1. 상기 예정이율은 제1보험기간 중에는「보장계약 예정이율」, 제2보험기간 중에는「공시이율」을 말합니다.

2.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약관 제25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